

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안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2년 2월 25일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2월 27일

3. 제안이유

'92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홍보상임위원의 월역수당 및 정근수당 지급

4. 주요골자

상임위원의 수당을 '92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531,000원으로 조정하고 월역수당의 100%에 해당되는 정근수당을 지급(조례 제 9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도정시책의 심도있는 홍보로 도민의 신뢰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이해와 참여도 제고로 대국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 홍보를 위해 위촉 운영되고 있는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상임위원에게 월 487,000원의 월역수당과 월역수당의 400%에 해당하는 기말수당만을 지급하여 왔으나 '92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월 531,000원의 월역수당과 월역수당의 400%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및 100%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